

『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, 녹색기술·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을 위하여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 계획의 수립,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, 녹색경제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,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,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, 기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○ 시·사업자·주민의 책무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)

- 국가시책에 협력하고, 주민교육, 홍보,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
- 사업자는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·협조
- 시민은 녹색생활을 적극실천하고 녹색제품 소비 등 기업 녹색경영 촉진에 힘써야하며 기후변화, 에너지자원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고 녹색생활 실천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7조)

-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 타 조례 제·개정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고, 관련 계획과 정책은 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

○ 추진계획 수립(안 제8조)

- 구미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

○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)

-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○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(안 제16조)

-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 구성

○ 녹색경제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(안 제17조)

-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, 친환경 주택보급, 필요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, 등록세 감면 등 지원
- 녹색기업의 육성지원 시책마련, 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우 지원 노력

○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(안 제18조)

- 에너지 절약·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 강구

○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(안 제19조)

- 녹색건축물 확산, 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·확대하고 공용차는 친환경 차로 교체하고,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

○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(안 제21조)

- 환경부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

○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안 제23조)

-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 수립

○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(안 제24조)

- 기업,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, 녹색생활실천 운동이 종합적, 체계적,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정부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
- 우리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, 녹색기술·녹색산업의 발전,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·계획을 공단도시인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부합 할 것으로 사료됨